# 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 운영기준

<mark>전면개정 2020.12.18</mark> 전면개정 2019.04.19 제정 2012.02.20

개정(4) 2019.07.30 개정(1) 2013.03.18 개정(5) 2020.11.03 개정(2) 2016.08.23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산관리기준 제14조의1에 의거 본점사옥 및 영업점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확보,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단 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2장 자산임대차심의위원회

제2조(구성) ①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내부위원은 상임이사 2인, 노동이사, 기획조정실장,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. 단, 영업점 임차심의시 신용보증부장, 예정 후보지 관할 지역본부장 1인을 내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.
- 2. 외부위원은 전문가 위원 1인, 시민 위원 2인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팀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 혹은 1월 이상의 장기 부재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규정에 의한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(5) 제1항 제2호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. 이사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.
  - 1. 전문가 위원 1인은 자산운용(부동산) 분야와 관련된 학위 소지 또는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
  - 2. 시민 위원 2인은 청렴옴부즈만 위원 중 감사실장이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한다.

**제2조의1(임기)**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가 유지될 때까지로 하며,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본점사옥 임대 관련 연간 기준 임대가(보증금, 임대료, 관리비) 및 임차인 등의 결정
- 2. 영업점 개설 및 이전을 위한 대상 물건지 선정
- 3. 기타 본점사옥 및 영업점 임대차 관련 중대한 사안의 결정

제4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시기를 통보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영업점 임차심의시에는 제9조에 따른다.
- ③ 위원회는 긴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
제5조(비용)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고 외부인사 참가 시 「회의수당 지급기준」에 의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 제3장 본점임대

- **제6조(임대심의)** 본점사옥 임대계약 체결 시 자산관리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.
  - 1. 서울지역 전체 및 본점사옥 주변 오피스 공실률
  - 2. 본점사옥 입주사별 임대가 및 주변빌딩 기준 임대가 등 계약조건
  - 3. 임차인의 규모 및 업종의 안정성, 장기 임대계약 유치 가능 여부
- 제7조(결정) 위원회는 본점사옥 임대 시 연간 기준 임대가를 토대로, 인근 유사물건 실례를 고려하여 실질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결정한다.

#### 제4장 영업점임차

- 제8조(임차심의) 영업점개설 및 이전을 위한 대상 물건지는 자산관리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【별표 1】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.
- 제9조(결정) 위원회는 제8조의 심의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 후보지를 영업점 임차계약 대상 물건지로 결정한다.
- 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지점 지점장, 관계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제5장 기타

제11조(적용배제) 다음 각 호의 경우 상기 기준적용을 배제한다.

- 1. 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사유로 단기 1년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2. 각 자치구에 위치한 25개 지점 이외의 특정업무 수행 영업점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3.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의 경우
- 4.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

# 부 칙(전면개정)

이 기준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<u>영업점</u> 물건지 선정 평가표

구분	평가지표	평가기준	배점	후보지 A	후보지 B	후보지 C
정성적 평가 (80)	주변 환경 (20점)	- 주변상권 - 자치구 특화산업 밀집 - 인근유관기관 인접도 (구청, 은행, 대학 등)	(상) 20			
			(중) 15			
			(하) 10			
		- 건물 내외부 청결상태 - 공동사용공간 관리상태 - 건물내 입주사 현황 등	(상) 20			
	건물 활용도 (20점)		(중) 15			
			(하) 10			
	고객펀의 (20점)	- 엘리베이터 편의성 - 장애인 출입 용이성 - 화장실 청결상태 등	(상) 20			
			(중) 15			
	(= 3 <u>=</u> 2		(하) 10			
	장단점 분석 (20점)	- 기타 장단점 분석	(상) 20			
			(중) 15			
	(2017)		(하) 10			
소 계			80			
정량적 평가 (20)		- 인근 300m 이내 지하철역 2개 이상	10			
	고객접근도 (10점)	- 인근 300m 이내 지하철역 1개 이상	8			
		- 인근 500m 이내 지하철역 1개 이상	6			
	3.3 <i>m</i> °당 순점유비용*	- 후보지 평균 이하	5			
		- 후보지 평균의 1.2배 이내	4			
	(5점)	- 후보지 평균의 1.5배 이내	3			
	계약가능기간 (5점)	- 5년 이상	5			
		- 3년 이상	4			
		- 1년 이상	3			
	소	계	20			
	합	계				

성	명	 (인)	)

# \*순점유비용(Net Occupancy Cost)

: 임차인이 물건지 점유에 따라 임대인에게 매월 지불해야하는 전용면적당 실제 부담하는 비용

주1〉 위원회 개최일 기준 최근 재단의 여유자금 예치이자율 적용한 임차보증금의 월 이자비용 주2〉 렌트프리(RF) 적용기간 반영하여 계산한 월평균 실제 임차료(부가가치세 제외)

